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0-79
--------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2011. 1. 1 시행되는 「지방세법」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여 법령 제·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총칙 규정 (안 제1조 ~ 제3조)

- 목적, 용어정의, 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 등

### 나. 등록면허세 관련 사항 규정 (안 제4조 ~ 제9조)

- 등록면허세 과세표준, 세율, 납기 등 관련내용

### 다. 재산세 관련 사항 규정 (안 제10조 ~ 제19조)

- 재산세 세율, 납기, 과세대상별 신고의무, 납세관리인 지정 등

## 3. 개정근거

### 가. 2011년도 자치구세 조례 표준안 시달

-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-3127(2010. 9. 28)
- 서울특별시 세제과-11970(2010. 9. 30)

## 4. 조례안 : 따로 불임

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 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」

나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0. 10. 14. ~ 11. 3.(의견있음)

    가) 조례명 수정(자치구 상호간 조례명칭 통일성 유지)

        -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→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

2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0.11.11)

3)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

#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세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「지방세법」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)** 구세의 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」 제5조에 따른다.

#### 제2장 등록면허세

#####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

**제4조(과세표준)** 「지방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 절에서 “등록면허세”라 한다)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**제5조(세율)**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유권의 보존: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(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 천원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2.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
  - 가. 지상권: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
  - 나. 저당권: 채권금액의 1천분의 2
  - 다. 지역권: 요역지(要役地) 가액의 1천분의 2
  - 라. 전세권: 전세금액의 1천분의 2
  - 마. 임차권: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
3. 경매신청 · 가압류 · 가치분 및 가등기
  - 가. 경매신청 · 가압류 · 가치분: 채권금액의 1천분의 2
  - 나. 가등기: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
4. 그 밖의 등기: 건당 3천원

**제6조(신고 및 납부)**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·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·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1. 등기 · 등록을 하려는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
2. 등기 · 등록의 원인
3. 과세대상의 소재지
4. 토지: 지번 · 지목 · 면적 및 용도
5. 건축물: 종류 · 구조 · 바닥면적 · 연면적 및 용도
6. 자동차 · 건설기계: 종류 · 연식 · 용도
7. 선박: 선질 · 명칭 · 정계장 · 구조 · 용도 · 총톤수 또는 적재량
8. 광업권: 광물의 종류 · 광구의 면적 · 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
9. 어업권: 어업의 종류와 명칭 · 어장의 면적 · 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 번호

10. 과세대상의 가액
11. 그 밖의 참고사항

##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

**제7조(세율)**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 절에서 “등록면허세”라 한다)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.

구 分	세 율
제1종	45,000원
제2종	36,000원
제3종	27,000원
제4종	18,000원
제5종	12,000원

**제8조(납기)**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.

**제9조(비과세 신청)**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.

1. 면허를 받는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
2. 면허물건의 소재지
3. 면허의 종류 및 종별
4.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## 제3장 재산세

**제10조(세율)**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## 1. 토지

### 가. 종합합산과세대상

과세표준	세율
5,000만원 이하	1,000분의 2
5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	10만원 + 5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
1억원 초과	25만원 + 1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

### 나. 별도합산과세대상

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1,000분의 2
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0만원 + 2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
10억원 초과	280만원 + 10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4

### 다. 분리과세대상

- 1) 전 · 담 · 과수원 · 목장용지 및 임야: 과세표준의 1천분의 0.7
- 2)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
- 3) 그 밖의 토지: 과세표준의 1천분의 2

## 2. 건축물

가.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(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)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1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: 과세표준의 1천분의 5

다. 그 밖의 건축물: 과세표준의 1천분의 2.5

## 3. 주택

가.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
나. 그 밖의 주택

과세표준	세율
6천만원 이하	1,000분의 1
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60,000원 + 6천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1.5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195,000원 +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2.5
3억원 초과	570,000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4

#### 4. 선박

- 가.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: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
- 나. 그 밖의 선박: 과세표준의 1천분의 3

#### 5. 항공기: 과세표준의 1천분의 3

**제11조(중과대상지역)**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.

**제12조(납기)**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**제13조(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)**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, 소재지, 지번, 구조, 용도, 충수,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서울특별시 시세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
2. 건축물을 및 주택을 신축, 증축, 개축한 때
3.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
4. 토지·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
5. 토지·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
6.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·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충수·면적을 증감한 때

## 7. 토지 ·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, 주소가 변경된 때

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, 종류,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서울특별시 시세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4조(선박에 관한 신고의무)**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, 명칭, 건조연월일, 기관번호, 정계장, 용도, 톤수, 취득가격, 과세사실 발생연월일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서울특별시 시세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선박을 취득한 때
2.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
3.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
4.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
5.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

**제15조(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)**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, 명칭, 제조연월일, 형식, 용도, 이륙중량, 적재능력, 취득가격,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서울특별시 시세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항공기를 취득한 때
2.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
3.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
4.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

## 5.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

**제16조(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)** 납세의무자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,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)**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.

1.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, 거소, 영업소 또는 사무소
2. 토지의 소재, 지번, 지목, 면적 및 용도
3. 건축물의 소재, 종류, 구조, 바닥면적, 연면적 및 용도
4. 주택의 소재, 지번, 종류, 구조, 면적 및 용도
5.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
6. 선박의 선질, 명칭, 정계장, 구조, 용도, 총톤수 또는 적재량
7. 항공기의 종류, 이륙중량, 적재능력, 항공기의 형식, 용도

**제18조(공용·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)**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자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자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으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납세관리인 지정)** 구청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납세관리인

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일반적 적용례)**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**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